

대 -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사내(공동)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실무 지침서

2019. 8.
www.moel.go.kr

대 -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사내(공동)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실무 지침서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Contents

Basic Property Use Working Handbook of
Employee Welfare Fund



● 01. 기본재산 사용 도입배경 및 내용	5
1. 기본재산 사용 허용 전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	6
2. 적립된 기본재산 사용 도입 배경	11
3.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14
● 02. 자주 묻는 질문	17
● 03. 사례를 통한 적용례	29
● 04. 행정해석모음	37
참고 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65
참고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9



일러두기

1.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법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각각 지칭함
2. “근로자”를 “노동자”로 대체할 수 있으나,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근로자”로 표기함
3. “협력업체 근로자”는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를 말함
4. “기본재산”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을 제외한 “적립된 기본재산(원금)”을 뜻함

01



대 -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사내(공동)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실무 지침서

기본재산 사용 도입배경 및 내용



기본재산 사용 허용 전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

- ✎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출연금 등으로 구성된 기금을 운용하여 그 수익금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을 할 수 있음
- ✎ 자금차입이 금지되고, 기본재산 등의 사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사용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1 '수익금' 등을 통한 목적사업

- 기금법인은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 기본재산, 차입금 등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말에 수익금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미리 기본재산 또는 회사자금으로 지출하고 추후 변제하는 방식으로 사용 불가

기금법인의 사업

- ① 근로자 주택구입·임차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 ② 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금 등의 지급 및 그 밖의 근로자의 생활원조
- ③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 ④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 ⑤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
 - *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사택 등(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⑥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 ⑦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 ⑧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한편, 기금은 아래 6가지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함(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47조제2항)

기금의 운용방법

- ①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 * 국내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 금융회사 포함
- ②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④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내에서 그 보유주식수에 따라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의 참여
-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 ⑥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2 '기본재산의 예외적 사용'을 통한 목적사업

-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중 50%이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또는 이월¹⁾하여 사용 가능(시행령 제46조제4항)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중 80%이내에서 목적사업 사용 가능(법 제62조제2항, 시행령 제46조제2항)

- ▲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 ▲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시행규칙 제26조의2, 출연금액의 100분의 10 초과)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 ▲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중소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 이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미리 기금법인 결산 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별도 계상할 필요

- 기본재산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²⁾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 가능(시행령 제46조 제4항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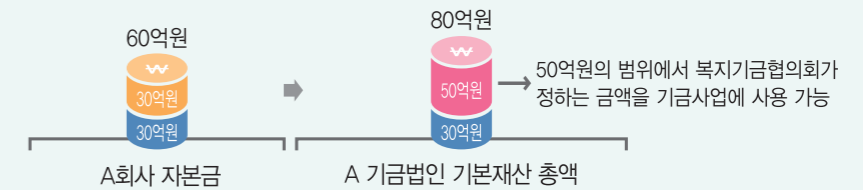
* 자본금이 없는 사업체의 기금은 이를 적용하지 않음

* 공동기금법인의 경우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참여회사 자본금 합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퇴직연금복지과-3010, '17.7.13)

예시

1. A 회사의 자본금이 60억원, A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A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80억원인 경우에 사용 가능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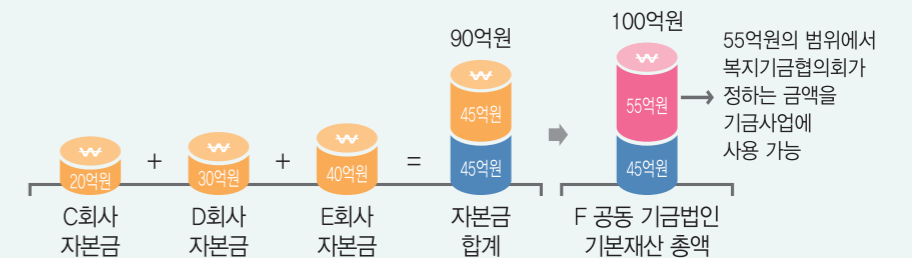
⇒ A 회사의 자본금의 50%인 30억원을 초과하는 50억원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사업에 사용 가능



2. C 회사, D 회사, E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F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F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100억원인 경우에 사용 가능한 금액

* C 회사 자본금 20억원, D 회사 자본금 30억원, E 회사 자본금 40억원

⇒ F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C 회사, D 회사, E 회사 자본금 합계의 50%인 45억원을 초과하는 55억원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사업에 사용 가능



2)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된 주식의 액면총액, 조합,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경우는 출자금

3 '기본재산'을 통한 근로자 대부사업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음

- * 1.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 2.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 3.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경우
-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시행령 제46조제5항)

기금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하므로 기금 재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부사업 규모를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대부사업의 대상 및 이자율·상환기간 등 대부조건은 사업별로 사업목적에 고려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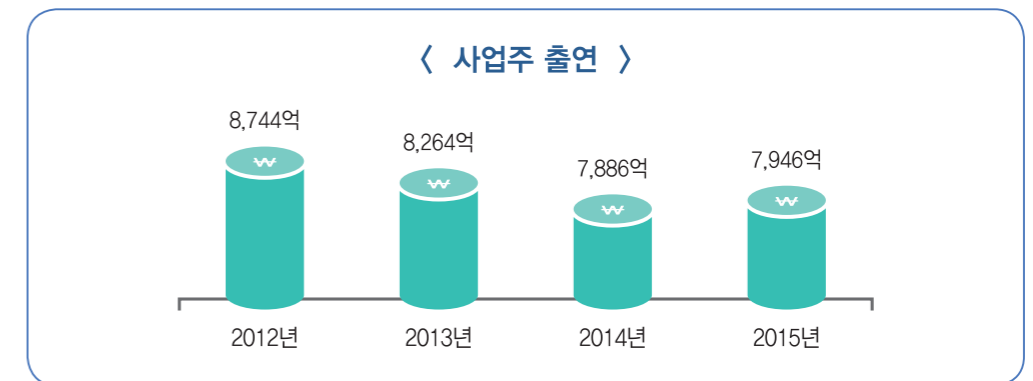
* 정관에 대부사업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

→ 이와 같이 기본재산 사용 허용 전에는 대부사업과 회사의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경우 외에는 적립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었음

적립된 기본재산 사용 도입 배경

■ 계속된 경기악화와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인해 사업주 등의 기금 출연과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은 지속적으로 감소

● 또한 매년 출연금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운영이 저조한 상태(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출연 저조)



- 이로 인해 복지사업이 축소·중단되거나 기금 존립이 우려되는 상황

■ 특히 기본재산 사용 제한으로 복지사업은 축소되고, 경기침체 시 중소·하청기업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악화로 기업 간 복지격차 확대

-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법정 외 복지비용은 300인 이상 기업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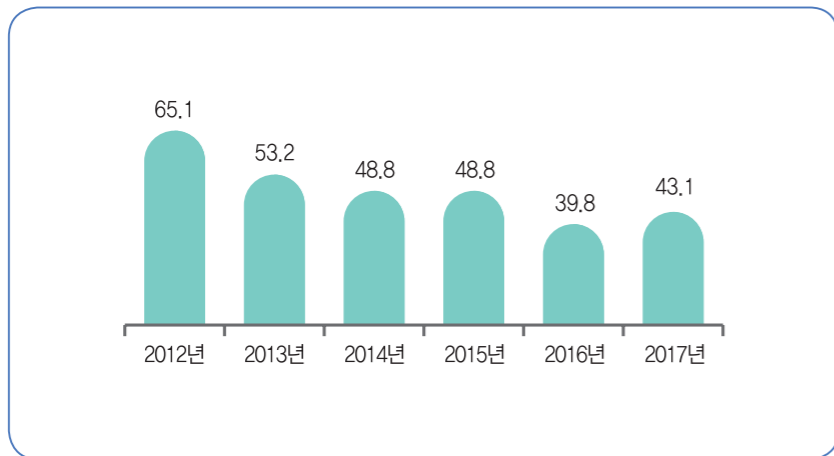
➔ 연도별 월평균 법정 외 복지비용

(단위: 천원)

항목	'12	'13	'14	'15	'16	'17
전규모	201.8	212.2	207.7	209.6	197.9	211.3
300인미만(A)	163.0	152.6	141.7	144.5	120.0	133.5
300인이상(B)	250.5	286.7	290.6	296.3	301.2	310.1
A/B×100	65.1%	53.2%	48.8%	48.8%	39.8%	43.1%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고용노동부)

➔ 연300인 이상 기업의 월평균 법정 외 복지비용을 100이라 할 때, 300인 미만 기업의 비용 수준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



- 저성장 기조와 경기악화는 전반적인 근로복지의 위축과 함께 기업규모별, 고용 형태별 복지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
- 이에 '기존 기금법인의 누적된 기본재산 활용'으로 근로복지사업의 지속적 시행 및 기업 간 복지격차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였음

■ 이에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하되,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통해 복지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 설계

-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2017.10.31. 대통령령 제28411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2018.1.29. 고용노동부령 제212호)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일정한 요건 하에서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음(시행령 개정)

대상

-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에 한해
- *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 이상을 적용 대상으로 함

요건

- 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 *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 불가

사용 범위

-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일정금액 이상을 반드시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여야 함(시행규칙 개정)

- 시행령의 위임(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따라
 -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 기준 구체화
- 기본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이
 - 해당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의 1인당 수혜금액의 25%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02

대 -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사내(공동)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실무 지침서

자주 묻는 질문



Q1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사업주의 기금 출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기금의 수익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 기존에 실시해 오던 근로복지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되거나 기금의 존립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음
 - 또한, 저성장 기조와 경기 침체는 대·중소기업 간, 고용형태별 복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음
 - 이에,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 더불어 원·하청 간 상생협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 하에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한 것임
- * 기금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 이상을 반드시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에 사용하도록 제도 설계

Q2 경기악화 등의 이유로 기금사업의 중단 또는 축소가 우려된다면 기본재산 사용을 전면 허용하여야 하지 않나요?

- A**
-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기금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성, 수익성 및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함

- 기본재산 사용을 전면 허용할 경우, 기본재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고,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됨
 - 이와 같은 이유로 기금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에 한해 5년간 기본재산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한 것임

Q3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이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재산과 근로자 수 산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 A**
- 해당 회계연도에 복지기금협의회가 기본재산을 사용하기로 협의·결정한다면, 직전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기본재산 총액과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 * 1분기 결산법인은 3.31.기준, 2분기 결산법인은 6.30.기준, 3분기 결산법인은 9.30.기준, 4분기 결산법인은 12.31.기준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이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Q3-1 직전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이상이 되지 않지만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이 이루어져 300만원 이상일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 A**
- 직전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기본재산 총액과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이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당해 회계연도에는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음

Q4 적립된 기본재산이 많아도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없으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나요?

- A**
-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없는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음
 - 또한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수혜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역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음
 - 이는 기본재산 사용 허용이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임

Q4-1 2차, 3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도 수혜대상으로 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 A**
- 현행법상 기금의 사업은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와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까지는 2,3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여 기금 사업을 할 수 없으며, 기본재산 사용도 불가함

Q4-2 자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고, 모회사의 기금법인이 자회사의 근로자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사업을 할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 A**
-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이거나 자회사의 근로자가 모회사에의 파견근로자라면 기본재산 사용 요건을 충족한 모회사 기금법인은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지배관계회사에 불과한 경우라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회사의 기금법인은 자회사 근로자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사업을 할 수 없음

Q4-3 직접 도급받은 업체가 여러 곳일 경우, 이중 일부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만 수혜를 주거나 하나의 협력업체 내에서도 일부 근로자에게만 수혜를 줄 수 있나요?

- A**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협력업체 또는 특정 근로자에게 한정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Q4-4 원청 및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이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나요?

- A**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기금법인의 수혜 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Q5 해당 회계연도에 복지기금협의회가 기본재산을 사용하기로 협의·결정하였다면 해당 회계연도에 모두 사용하여야 하나요?

- A**
- 그렇지 않음. 기금법인의 사정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도 있으며, 해당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

Q6 '5년마다'의 의미가 불명확한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 A**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정에 따라 5년에 한번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 이때 '5년마다'의 의미는 기본재산 사용금액을 매 5년마다 한번씩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함

Q6-1 기본재산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라면 3년간 100분의 10을 사용하기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였다가 3년후 다시 2년간 100분의 10을 더 사용하기로 협의·결정할 수 있나요?

- A**
- 그렇게 할 수 없음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고, 5년마다 매 5년마다 한번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함
 - 기본재산의 100분의 20범위에서 5년간 얼마를 사용할 지는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할 사항이나 5년마다 사용할 금액의 총액은 매 5년마다 한번씩 정하여야 하며, 5년간 사용할 금액의 총액이 100분의 20범위 내 일지라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다시 협의·결정할 수 없음

※ 기본재산의 10%를 3년간(2018~2020)에 걸쳐 사용하기로 2018년 복지기금 협의회가 협의·결정하였다면 2023년 이전에는 기본재산 사용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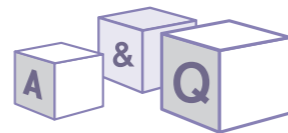
Q6-2 5년간 기본재산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하였는데, 기본재산의 감소로 5년후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미만이 된다면 다시 사용할 수 없나요?

- A**
- 다시 사용할 수 없음. 기본재산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5년간 다시 기본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한 기본재산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함

Q7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금이 있다면 출연금과 기본재산을 같이 사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나요?

A ○ 같이 사용할 수 있음

- 해당 회계연도에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할 경우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하지 않으면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까지만 사용 가능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을 사용할 경우 5년마다 기본재산의 20%까지 사용할 수 있음



Q8 기본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원청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때 수혜금액 산정 시 직접 수혜를 받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나요?

A ○ 그렇지 않음.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 산정 시 직접 수혜를 받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도급받는 업체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이는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일부 근로자에게만 복지수혜를 주고, 사실상 원청 근로자들만 수혜를 보는 등 법령 개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3쪽 작성방법 27. 참조)
- 참고로, 원청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 산정 시에도 직접 수혜를 받은 원청 소속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3쪽 작성방법 26. 참조)

Q8-1 파견근로자 수 산정은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하나요?

A ○ 파견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체근로자가 아니라 해당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만을 의미함

Q8-2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사용하여야 할 수혜금액 산정 시 대부사업비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나요?

- A** ○ 기본재산 사용 범위 확대의 취지는 기금 출연과 수익 감소에 따른 복지사업의 축소 또는 중단으로 인한 근로자 복리후생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대부사업은 제한없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에 따른 경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이때 그 출연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 대부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혜금액 산정 시 대부사업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함

Q9 과거 재원이 부족하여 중단되었던 복지사업을 이번에 사용 가능해진 기본재산을 통해 소급하여 실시할 수 있나요?

- A** ○ 금번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시행일(2018.2.1.) 이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 사용 가능해진 기본재산을 재원으로 하여 과거 중단된 기간 동안 실시하지 못한 복지사업을 소급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 복지사업 중단 기간 중에 퇴사한 직원과 임원으로 선임된 직원에 대해 금번 제도개선으로 사용이 가능해진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복지혜택을 부여할 수 없음

Q10 기본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지사업의 수혜범위를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확대한다는 것과 5년마다 기본재산의 20%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요?

- A**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기금의 조성, 관리방법, 출연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등을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기본재산 사용을 위해서는 수혜범위 확대 및 사업비 재원 등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정관 변경이 필요함
 - 다만, 정관에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른다'는 준용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없이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할 것임

Q11 기본재산 사용범위나 수혜대상 등을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A** ○ 기본재산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기본재산을 사용하거나,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사용할 금액 기준 등을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할 경우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와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 및 제9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음

03



대 -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사내(공동)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실무 지침서

사례를 통한 적용례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해진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복지사업을 하는 가공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 것임

기본재산 사용 요건

- ①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 ② 일정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 ③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자본금 : 500억)
- **업종** 자동차부품제조 ● **설립일** 1990. 1. 1.
- **소속 근로자 수** 300명 ● **회계연도** 1. 1. ~ 12. 31.
- **직접 도급받은 업체(1차 협력업체) 및 파견업체 현황**
 - A협력업체(근로자 수 25명)
 - B협력업체(근로자 수 50명)
 - C파견업체(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수 10명)

2 기금법인의 설립과 현재까지의 상황

기금법인 설립

- 주식회사○○는 경기 호황에 따른 영업이익의 확대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20억원을 출연하기로 하고,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설립등기 '10. 3. 1.)

기금 출연

-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10. 3. 15. 이익금의 일부인 20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

기금 사업

- 기금법인의 복지기금협의회는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를 소속 근로자(300명)를 위해 사용하기로 하고 학자금 보조, 경조비 지원, 명절 선물,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등으로 해당 회계연도인 2010년에 10억을 사용하고 나머지 10억원은 기본재산으로 편입

기금사업의 중단

-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금법인은 매년 사업주의 출연금(20억) 중 50%인 10억을 기금사업에 사용하다가
- 2016년 사업주는 경기악화와 거래처 연쇄부도 등으로 영업 이익이 급감하자 기금법인에 출연 중단(2015년까지만 출연)
- 기금법인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이 없어지고 국제적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6년 복지사업을 중단하기에 이룸
※ 적립된 기본재산 : 60억(10억×6년)
- 이와 같은 상황은 2017년에도 계속되고 그간 복지수혜를 받아오던 근로자들의 노동의욕 저하와 이에 따른 생산성 하락
- 현재까지 적립된 기본재산이 60억원에 이르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적립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음

3 고용노동부의 제도개선

-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받은 업체 및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할 경우, 적립된 기본재산의 20%까지 5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 2017. 10. 31. 시행일 2018. 2. 1.)
- 이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 중 직접 도급받은 협력업체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 되어야 함(「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 2018. 1. 29. 시행일 2018. 2. 1.)

4 개정법령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을 통한 기금사업 실시

적용대상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2천만원*으로 개정법령의 적용 대상임(1인당 300만원 이상)
* 2천만원 = 기본재산(60억)/근로자 수(300명)

사용가능 기본재산

- 기본재산 총액(60억원)의 100분의 20인 12억 범위 내에서 5년간 사용 가능
※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최대 12억까지 사용가능

수혜범위 확대 및 사용금액

- 12억 범위 내에서 5년간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지만 수혜 범위를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확대하여야 하고 협력업체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이 원청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이상*이 되도록 비용을 지출하여야 함
- * 원청 근로자 1명당 100만원을 사용하기로 한다면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25만원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25%이상이므로 원청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과 동일하거나 더 많아도 무방)
- ※ 협력업체 근로자가 없거나 협력업체 근로자가 있음에도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하지 않으면 기본재산 사용은 불가

예 시

12억원 전액을 기금사업에 사용하기로 하고 원청(300명)과 협력업체 근로자 전원(85명)을 수혜대상으로 한다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1인당 933,852원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산정식】

- ◆ 하청 근로자 1인당 최소 수혜금액 = $\frac{\text{기본재산 20\% 범위 내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text{원청 근로자 수} \times 4 + \text{협력업체 근로자 수}}$
- ◆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 = 원청 근로자수 × A + 협력업체 근로자 수 × B, 단, A ≤ 4B
* 원청 근로자 1인당 사용금액(A), 협력업체 근로자 1인당 사용금액(B)

5년 단위로 사용 가능

-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5년간 사용이 가능
-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을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였다면 당초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음

적용례 1

- 2018. 1. 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기본재산의 20%(12억) 전액을 해당 회계연도인 2018년에 복지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고, 2018년에 기금사업을 통해 모두 집행했다면 2023. 1. 1. 이전에는 다시 복지기금협의회는 기본재산 사용을 결정할 수 없음
 - * 2023. 1. 1. 이후 기본재산 사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복지기금협의회는 기본재산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적용례 2

- 2018. 7. 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기본재산의 10% (6억)를 3년(2018~2020)에 걸쳐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집행했다면 2023. 7. 1. 이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기본재산 사용을 결정할 수 없음(2023. 7. 1. 이후 다시 5년 단위로 기본재산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 2021년에 다시 나머지 10%를 2021~2022년에 걸쳐 다시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 없음

적용례 3

- 2018.1.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기본재산의 15%(9억)를 3년(2020~2022)에 걸쳐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고 2020년~2022년에 집행했다면 2023. 1. 1. 이후 다시 5년 단위로 기본재산 사용 가능
 - * 2023년에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 이후 연도에 결정을 할 수도 있음



04



대 -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사내(공동)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실무 지침서

행정해석모음



기본재산 사용의 의미 및 금액기준 등

(2018. 2. 9. 퇴직연금복지과-667)

Q -1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는 매 5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인지?

A ○ 귀 질의 내용처럼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11호)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12호, 2018.1.29.) 제26조의2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2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사용조건인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금액의 별도기준은?

A ○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할 금액 기준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Q -3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이 소속 근로자의 수혜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다면, 수혜금액 산정 시 목적사업비 외 대부사업비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A ○ 기본재산 사용 범위 확대의 취지는 기금출연과 수익 감소에 따른 복지사업의 축소 또는 중단으로 인한 근로자 복리후생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에 따른 경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그 출연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토록 하면서 대부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수혜금액 산정 시 대부사업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협력업체 수혜 범위 및 차등 적용 여부 등

(2018. 5. 3. 퇴직연금복지과-1825)

Q -1 기본재산 사용을 위해 수혜범위를 확대할 때, 협력업체 근로자 중
도급·용역·하청 근로자를 제외하고 파견근로자에게만 한정해서
복지사업을 해도 되는지?

-2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할 때, 기금법인의 모든 복지사업을
적용해야 하는지, 복지사업 중 일부만 적용해도 되는지?

A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도급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한정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기금법인의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 기준을 토대로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3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으나, 채권추심, 콜센터 등 아웃소싱
부문과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IT용역의 경우에도 협력업체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A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과 채권추심, 콜센터 등
아웃소싱 부문과 IT용역 부문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 채권추심 및 콜센터 부문이 직접 도급받은 업체인지, IT용역 부문이 해당 사업체의
파견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Q -4 개정된 운영상황보고서의 '㉔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㉕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이상이 되도록 기금법인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혜택 부여 금액을 산정하면 되는지?

A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
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체의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운영상황보고서 ㉕항목의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㉔항목의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Q -5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을 보면 '㉔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 금액'은 협력업체 근로자 기본재산 사용액을 '㉔협력업체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을 하는데, 이 때 '㉔협력업체 근로자 수'가 '㉔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 수'와 일치하는지?

A 운영상황보고서의 '㉔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수를 의미하며 '㉔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기본재산 100분의 20 범위 사용을 통해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바, 기금법인의 복지사업 수혜범위에 따라 일치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6 연도 중 입·퇴사 등으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은 근로자 수와 회계연도 말 기준 근로자 수가 차이나는 경우 운영상황보고서의, ㉔, ㉔번 항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A 운영상황보고서 사업체 현황의 ㉔근로자 수와 ㉔협력업체 근로자수는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수를 기재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산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Q -7 근로자 수 산정 시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연간 재직기간을 환산해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반영해도 되는지?
(ex : 6개월 근무자 0.5명, 9개월 근무자 0.75명)

A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근로자 1명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Q -8 복지사업을 할 때, 수익금, 출연금, 기본재산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사용분에 한해서만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 금액을 산정하여 ㉔번 항목이 ㉔번 항목의 25% 이상 되도록 지원하면 되는지, 자원 사용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지?

A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의 규정과 같이 기본재산은 같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운영상황보고서 ㉔항목의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㉔항목의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수익금, 당해연도 출연금, 기본재산 등 기금법인의 사업 자원 간 사용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Q-9 현재 재원이 부족하여 복지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선택적 복지의 경우 2016년 미지급액이 2017년에 이월되어 합산되어 있는 상황인데, 2016년도 이월분을 포함하여 미지급한 선택적 복지 포인트를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이 때,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2017년부터 매년 일정 금액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2016년도 분도 소급적용해야 하는지?

A ○ 금번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시행일(2018. 2. 1.) 이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용 가능해진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재원으로는 기금법인이 설립된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대해 중단 된 기간 동안 실시하지 못한 복지사업을 소급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Q-10 복지사업 중단 기간 중에 퇴사한 직원과 임원으로 선임된 직원에 대해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복지혜택 부여가 가능한지?

A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퇴직자나 임원은 수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경조사비와 같이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지급사유가 퇴직자 재직 시나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기준(신청자격, 신청유효기간 등)과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 금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일 2018. 2. 1.)에 따라 사용 가능해진 기본재산을 재원으로 복지혜택 부여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Q-11 복지사업의 수혜범위를 협력업체 근로자로 확대한다는 내용과 5년 단위로 기본재산의 20%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지?

A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관리방법, 출연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등을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바,
-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른다' 등의 준용규정을 두지 않는 한 수혜대상 및 사업비의 재원 등이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것이므로 정관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협력업체 수혜 대상 제외 또는 차등 적용 여부 등

(2018. 6. 7. 퇴직연금복지과-2261)

Q -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본재산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수혜범위를 확대할 때, 도급 근로자의 일부를 수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2 도급업체가 공공기관의 자회사로서 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급여, 복리후생 등)이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보다 좋을 경우에, 도급 근로자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A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이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서 도급 근로자의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력업체 사용 금액기준 및 ‘5년마다’의 의미 등

(2018. 6. 7. 퇴직연금복지과-2263)

Q -1 용역 및 파견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 산정 시, 대부 금액은 제외하고 무상 복지사업 지원액만을 소속 근로자의 25% 수준으로 정해도 되는지?

A ○ 기본재산 사용 범위 확대의 취지는 기금출연과 수익 감소에 따른 복지사업의 축소 또는 중단으로 근로자 복리후생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는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대부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수혜금액 산정 시 대부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Q -2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사업은 경조금 등으로 용역 및 파견근로자의 수혜금액을 사업장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이상으로 정확히 일치시키기가 불가능한데, 제도상 용역 및 파견근로자의 수혜금액을 25% 이상으로 설계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연간 1명당 수혜금액을 실제 25% 이상으로 맞추어야 하는지?

A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는 강행규정으로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년간 사용한 금액 중에서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실제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 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Q -3 소속 근로자 수 대비 용역 및 파견 근로자 수가 적어 수혜금액 총액이 적어도, 용역 및 파견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 총액이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면 기본재산 20%의 대부분의 재원을 소속 근로자 복지사업에 사용해도 되는지?

A ○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수와 수혜금액의 총액과 관계 없이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 해당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4 용역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복지 항목별 지원 금액을 소속 근로자의 25% 수준으로 정하여도 불합리한 차별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A ○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라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이어야 하며, 이 때 1명당 수혜 금액은 항목별 금액이 아닌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Q -5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5년마다 정하는'의 의미가 기본재산을 사용한 후 최소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A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5년마다 정하는 금액'에서 '5년마다'의 의미는 기본재산 사용금액을 매 5년마다 한 번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사용기간

(2018. 6. 18. 퇴직연금복지과-2374)

Q-1 기본재산 사용 요건 중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이상인 금액인데, 1명당 수혜금액 25%의 사용 기간

A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 5년간 사용할 금액 중에서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실제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인 되어야 합니다.
- 또한, 동 금액은 기금법인의 사정에 따라 5년에 한번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금액, 수혜범위 차등 적용 여부 등

(2018. 6. 18. 퇴직연금복지과-2376)

Q-1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1,800억, 소속 근로자 수 14,000명, 하청 근로자 수 4,000명일 때, 아래 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기본재산 사용가능액 (기본재산×20%)	소속 근로자수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	하청 근로자수	하청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
5년 이내 최대 사용 가능액	36,000	14,000	2.4	4,000	0.6
		33,600		2,400	
1년 평균 사용 가능액	7,200	14,000	0.48	4,000	0.12
		6,720		480	

A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라 해당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바,
- 귀 기금법인의 경우에는 질의에서 산정한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2 기본재산 사용 시 원청 및 하청 근로자 대상 상이한 고유목적사업 지원이 가능한지?

- 원청 근로자에게 창립기념품 지급, 하청 근로자에게 설명절 격려품 지급
재원으로 기본재산 사용

A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기금법인의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Q -3 기본재산 사용조건 충족 시 기본재산 5년 단위 영구사용 가능여부

A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의 경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 「근로복지기본법」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여부에 대해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Q -4 일부 하청업체 또는 하청업체 직원 중 특수직군 근로자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혜택 부여 가능여부

A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하청업체 또는 특정 근로자에 한정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기금법인의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의미 및 금액기준 미준수 시 불이익 등

(2018. 8. 20. 퇴직연금복지과-3318)



-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의 20% 사용 관련,

-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한정되는지,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로 확대해도 되는지?
- 회사에서 도급과 파견 근로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회사의 복지제도를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그대로 제공하여도 25%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기본재산 20%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 회사에서 25%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입했는데, 결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했을 때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 25%는 ①(회사직원이 혜택받은 금액/직원 수)과 ②((도급업체직원+파견직원이 혜택받은 금액)/(도급직원 수+파견직원 수))를 비교하는 것인지, 운영규정 상 혜택이 25%이상 규정되어 있으면 충분한지?

A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2018.2.1.시행)으로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명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5년마다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도급 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는 장소적으로 원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는 강행규정으로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년간 사용한 금액 중에서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263, 2018.6.7.)

-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할 경우 기금법인을 운용한 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②의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은 ①의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는 규정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한 금액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재산 사용 시 회계처리 등

(2018. 12. 17. 퇴직연금복지과-5024)

Q -1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 회계 처리는 기금법인의 회계와 분리해야 하는지, 통합해야 하는지?

A ○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사용한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의 분리 또는 통합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은 기금법인의 사업에 해당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 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영·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 관리회계'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참조)

Q -2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증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A ○ 근로복지기본법령은 협력업체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증빙자료 보관에 대하여 별도 정한 바는 없으나,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등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Q -3 정부 경영평가 받는 기관의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용한 금액도 기금법인 설립 사업자의 1인당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는지?

- 4 포함된다면 인원 산출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포함시키는지, 기금법인 설립 사업자의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 5 1인당 기금 누적액 산정 시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시키는지, 기금법인 설립 사업자의 근로자만으로 산정하는지?

A ○ 귀하와 유선 확인 결과, 질의3부터 질의5는 정부 경영평가 시 지표 산출 방법에 관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인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6 기획재정부의 사전협의를 필요한 정부기관의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회계연도 하반기에 협의 결과가 확정되는데 확정 전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사용해도 되는지, 확정 이후 사용해야 하는지?

A ○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기금법인의 복지사업 시행 시기에 대하여 별도 정한 바 없으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확정 전 복지사업 시행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은 소관인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7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은 의결한 연도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지, 5년 동안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

A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은 기금법인의 사정에 따라 5년에 한 번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퇴직연금복지과-2374, 2018.6.18.)

- '5년마다 정하는 금액'에서 '5년마다'의 의미는 기본재산 사용금액을 매 5년마다 한 번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263, 2018.6.7.)

Q -8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신설해도 되는지, 기금법인의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지?

A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기금법인의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76, 2018.6.18., 퇴직연금복지과-1825, 2018.5.3.)

- 다만,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생활원조 등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가 정한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Q -9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의 100분의 20범위 사용과 함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까지 목적사업준비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지?

A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혜금액 산정 기준 및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범위

(2019. 7. 2. 퇴직연금복지과-2943)

Q -1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본재산의 복지사업비 전환 관련,

-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호 관련, 기금법인 근로자의 수혜금액 산정에 대한 기준
(예: 기본재산의 복지사업비 전환 금액 중 직접 도급업체 등 지원을 제외하고
실제 기금법인 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금액, 전년도 기금법인의 복지사업비
집행금액 등)

A ○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는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해야 하는 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금액(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년간 사용한 금액 중에서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263, 2018.6.7.)

Q -2 직접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 지원 대상 판단 시점, 회계연도 기준 결산 말일 기준 기금법인 소속 근로자, 도급 및 파견 근로자인지?

A ○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
법인이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에게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
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3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범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설립된 자회사도 포함이 되는지

A ○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설립된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라면 모회사의 기금법인은 기본재산 사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회사 근로자
까지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으나,
- 자회사가 직접 도급받는 업체에 해당되지 않고 단순히 지배관계회사에 불과한
경우라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회사의 기금법인은 자회사
근로자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본재산의 사용 요건

(2019. 7. 8. 퇴직연금복지과-3029)



- 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요건
- 2 시행령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매 5년마다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 당해 연도 출연금 중 기본재산에 대해서만 20%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쌓여있는 기본재산 적립금 총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 '매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이 사용범위를 한 번 정하면 5년 동안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인지, 1년에 한 번 사용범위를 정하면 그 금액을 5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 3 요건이 충족되어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하다면, 사용 범위가 직원까지 포함해서 사내 도급업체(파견업체 포함) 직원들에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사내 도급업체(파견업체 포함) 직원들에게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 4 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계산 시에 영향을 미치는지

A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 범위 내의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11호, 시행일 : 2018.2.1.) 개정으로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12호)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할 금액 기준은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667, 2018.2.9.)

○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금법인이 설치된 회사의 소속 근로자까지 적립된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5년마다 정하는 금액'에서 '5년마다'는 기본재산 사용금액을 매 5년마다 한 번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퇴직연금복지과-2263, 2018.6.7.)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은 기금법인의 사정에 따라 5년에 한 번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74, 2018.6.18.)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바,
 -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지출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제3자 출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 -3320, 2015.9.25.)
 -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의미하므로, 공단의 지원을 받아 기본재산이 증가한다면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른 금액도 달라질 것입니다.
 - 다만, 적립된 기본재산이 아닌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공단 지원금)을 사용하여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사업을 할 경우의 금액기준은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에 따른 금액기준을 따라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 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 제35조제2항 중 “제32조제2항제4호의 기본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46조제4항제2호 중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2조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제6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조합차입)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6. (생략) ② (생략)	제21조(조합차입)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기본재산의 총액 5.·6. (생략) ③ (생략)	제32조(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 5.·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변경등기 등) ① (생략) ②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제4호의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변경등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기본재산----- ----- -----

③ (생략)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① ~ ③ (생략)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생략)
2.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신설〉

⑤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현행과 같음)
2. 기본재산-----

3.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⑤ (현행과 같음)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 -----.
1. 법 제35조제8항·제9항에 따른 보고의 수리(受理)	<삭 제>
2. ~ 11. (생략)	2. ~ 11.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참고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 212 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46조제4항제1호의 경우: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구입·설치 금액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부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2. 영 제46조제4항제3호의 경우: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의2(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란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구입·설치 금액과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에게 대부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복지기금협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p>	<p>제26조의2(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p> <p>1. 영 제46조제4항제1호의 경우: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구입·설치 금액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부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복지기금협회가 정하는 금액</p> <p>2. 영 제46조제4항제3호의 경우: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p>

<p>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회가 정하는 금액</p>
--

만든 사람들

근로기준정책관 김경선
퇴직연금복지과 과장 여성철
사무관 이강욱
주무관 남혜림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사내(공동)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실무 지침서

발행일 2019년 8월
발행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주소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562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인쇄처 동명기획 ☎ 044-868-7542

1.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발행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